

# 보증지원 제한기업 사례 예시



2022-경영기획본부-295



## 신용보증기금

- ① 휴업중인 기업
- ②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
- ③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
-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(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)
- ⑤ 보증금지대상 제1호(채무연탈기업)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보증금지대상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인 기업
- ⑥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
  - 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채무연탈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 - ㉡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,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
  - ㉢ 신보의 매출채권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
- ⑦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
  - ㉠ 위 제7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중 신보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
  - ㉡ 위 제7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
  - ㉢ 위 제7호의 기업의 실제경영자
- ⑧ 위 제7호 가목,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
- ⑨ 허위자료 제출기업
- ⑩ 신보, 기보, 보증재단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(사고)기업

## 기술보증기금

- ① 휴업중인 기업
- ② 채무관계자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 또는 대표이사인 기업
- ③ 기업, 대표자, 실제경영자, 주력기업이 신용 관리 정보대상자
- ④ 파산·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있거나 청산 들어간 기업
- ⑤ 대출금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
- ⑥ 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
- ⑦ 기금, 신보, 재단 보증사고 기업
- ⑧ 기금 사고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이거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
- ⑨ 기금-신보 재단에서 채권변제 받지 못한 기업
- ⑩ 9호 기업의 이사, 업무집행자, 업무집행사원, 대표(공동경영자 포함), 실제경영자가 대표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있는 기업
- ⑪ 9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 경영자 포함)로 되어있는 기업
- ⑫ 기보 보증이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기업
- ⑬ 기보 보증금액이 15억을 초과하는 기업
- 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미 사용 중인 기업

## 무역보험공사

- ① 휴폐업 상태인 기업
- ② 채무자 및 보증인 구상채무 미이행 중인 기업
- ③ 부실자료 제출기업
- ④ 무역보험사고 귀책사실이 있는 기업
- ⑤ 환수금을 연체 중인 기업
- ⑥ 신용등급이 공사 G, R급에 해당하는 기업
- ⑦ 재무기준 미부합
  - 부채비율 500%초과, 이자보상배수·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 미흡
- ⑧ 대표자 소유 거주주택 및 사업장이 권리침해 중인 기업
- ⑨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한 기업
- ⑩ 채무자, 채무자의 대표자, 연대보증인 불량거래처 지정
- ⑪ 보증인이 사고발생기업의 채무자 관련인 여부
- ⑫ 국제, 지방세, 국민연금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
- ⑬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,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

### 무역보험공사 참고

#### 보증 지원

-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·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

#### 보험 지원

-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 이행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



※ 상기 항목들은 보증진행불가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상세한 내용은 각 지점에서 상담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됨

안전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은 안전보건공단과 협약 금융기관 간의 업무협약에 의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협약 종료 시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을 위한

신용보증기금+기술보증기금+무역보험공사

# 보증지원 프로그램

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한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시 **공단 협약 금융기관**의 보증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

## 주요 보증혜택

- 01 **[신용보증+기술보증기금]**  
보증 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용 100% 적용
- 02 **[신용보증+기술보증기금]**  
기업별 보증료율에서 0.2%p 감면
- 03 **[무역보험공사]**  
한도 1.5배 우대 및 보증료 20% / 보험료 30% 할인





## 보증지원이란?

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, 시장성,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대출액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

### 1 지원 대상 (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)

| 공단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대상   | 지원 가능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(KOSHA 18001, MS) | 인증기업   | 지원 대상 판단<br>기준일로부터<br>3년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위험성평가                       | 인정기업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안전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(공모전)        | 수상기업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안전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 (예비 포함)      | 선발기업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              | 참여기업   | 지원 대상 판단<br>기준일의<br>익년도 1년<br>(1. 1. ~ 12. 31.) |
| 6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·확인 심사        | 적합판정기업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> 예시

-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일이 '22. 6. 10.이라면 '25. 6. 9.까지 신청 가능
- ② 위험성평가 인정일이 '22. 6. 10.이라면 인정 유지기간인 '25. 6. 9.까지 신청 가능  
- 단, 지원 가능기간이라도 사후심사에서 탈락할 경우, 보증지원 대상에서 제외
- ③ 안전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공모전 수상기업은 수상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 가능
- ④ 안전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 선발기업은 선발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 가능
- ⑤ '22년도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'23년 1월~12월 신청 가능
- ⑥ '22년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·확인 심사 적합판정기업은 '23년 1월~12월 신청 가능

### 2 협약 금융기관별 지원 기준

#### > 신용보증기금

개인 및 법인기업\* 중 공단의 지원 대상 사업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,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
##### \* 개인 및 법인기업 등 대상기업

-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, 법인기업 및 중소기업
-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 업종
- 단, 대기업은 제한되며,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

#### > 기술보증기금

중소 제조기업\* 중 공단의 지원 대상 사업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,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
##### \* 중소 제조기업: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-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등록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#### > 무역보험공사

중소·중견기업\* 중 공단의 지원 대상 사업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,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
##### \* 무역보험법 제8조의3 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출기업

##### \* 지원가능한 대출자금 종류 및 대상거래를 이용하는 수출기업

- 수출신용보증(선적전):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등
- 수출신용보증(매입): 1년 이내 무신용장 수출거래

### 3 사업 진행 절차

| 신용보증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보증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역보험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r><b>보증신청 및 상담</b><br>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<a href="http://www.kodit.co.kr">www.kodit.co.kr</a><br>영업점 방문상담, 전화상담 등<br><b>대표전화 1588-6565</b> | <br><b>보증신청 및 상담</b><br>홈페이지 내 사이버영업점 <a href="http://www.kibo.or.kr">www.kibo.or.kr</a><br>영업점 방문상담, 전화상담 등<br><b>대표전화 1544-1120</b> | <br><b>보증신청 및 상담</b><br>홈페이지 내 사이버영업점 <a href="http://www.ksure.or.kr">www.ksure.or.kr</a><br>영업점 방문상담, 전화상담 등<br><b>대표전화 1588-3884</b> |
| <br><b>자료수집 및 조사</b><br>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r><b>자료수집 및 조사</b><br>기술사업계획서 검토, 기술개발능력, 제품화능력 등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r><b>자료수집 및 조사</b><br>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r><b>보증심사 및 승인</b><br>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산출<br>보증지원 가능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, 승인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r><b>보증심사 및 승인</b><br>기업의 기술력, 사업전망, 경영능력 등을 고려해 승인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r><b>보증심사 및 승인</b><br>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산출<br>보증지원 가능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, 승인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r><b>보증서 발급</b><br>보증약정 체결<br>전자보증서 발급<br>보증료 수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r><b>보증서 발급</b><br>보증약정 체결<br>전자보증서 발급<br>보증료 수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br><b>보증서 발급</b><br>보증약정 체결<br>전자보증서 발급<br>보증료 수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> 보증서 발급 소요기간

- 서류접수 후 현장조사(일본 평가일)로부터 약 4~6일 소요 (변동 가능)

#### > 보증료 산정

-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
- 보증료율은 기업의 평가등급, 보증금액, 이용기간,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  
※ 사회적기업의 경우,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

#### > 유의사항

- 기업 신용 및 경영상태가 협약 금융기관 지원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, 보증지원이 실행되지 않음
- 사업별 기준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금융기관 여신 실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서 지원 가능